

#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945
----------	------

제출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구분	규모(㎡)	총계(건)	재정비(안)		비고
			존치	해제가능	
학교	370,612.3	33	23	10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학교	23	2,371,802	3	287,933	11	1,233,022	9	850,847

##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별첨1]

## 4. 참고사항: 관련 법령 [별첨2]

[별첨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연번	학교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결정시기	재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안)
1	고	서초구 잠원동 71-10	11,608.0	1986. 5. 17.	존치	1단계
2	고	동작구 흑석동 60 일원	14,047.0	2008. 9. 11.	존치	1단계
3	초	송파구 장지동 17 일원	11,030.0	2010. 11. 3.	존치	1단계
4	초	송파구 마천동 613	6,903.0	2005. 12. 29.	존치	1·2단계
5	초	서초구 반포동 1300 일원	12,277.0	2017. 4. 27.	존치	1·2단계
6	중	서초구 반포동 1305 일원	10,615.0	2017. 4. 27.	존치	1·2단계
7	중	은평구 증산동 131-98 일원	12,681.3	2008. 5. 22.	존치	1·2단계
8	초	서대문구 북가좌동 80-36 일원	7,438.0	2012. 6. 7.	존치	1·2단계
9	초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일원	11,194.0	2012. 12. 21.	존치	1·2단계
10	초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0	2012. 12. 21.	존치	1·2단계
11	초	강남구 개포동 산156-2 일원	9,740.0	2016. 12. 8.	존치	1·2단계
12	중	강남구 자곡동 102 일원	10,624.0	2018. 1. 9.	존치	1·2단계
13	초	용산구 한남동 665-9 일원	10,763.0	2009. 10. 1.	존치	1·2단계
14	중	강동구 둔촌동 180-1 일원	16,124.9	2006. 11. 2.	존치	1·2단계
15	초	동대문구 휘경동 118-1 일원	10,000.0	2008. 1. 7.	존치	2단계
16	초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일원	9,070.1	2008. 2. 5.	존치	2단계
17	초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	14,999.8	1981. 7. 7.	존치	2단계
18	고	구로구 천왕동 14-137	12,293.0	2006. 11. 13.	존치	2단계
19	중	강동구 강일동 473-4 일원	11,000.0	2012. 12. 22.	존치	2단계
20	중	송파구 마천동 590	23,678.0	2008. 9. 5.	존치	2단계
21	초	서초구 잠원동 61-6, 61-18	10,556.1	1986. 5. 17.	존치	2단계
22	초	강남구 일원동 737	12,291.6	1990. 2. 2.	존치	2단계
23	초	강북구 미아동 438 일원	17,750.0	2010. 3. 18.	존치	2단계
24	-	도봉구 도봉동 624-107 일원	5,756.2	1982. 2. 3.	해제요청	-
25	-	서초구 서초동 1325 일원	14,130.6	1983. 7. 5.	해제요청	-
26	-	노원구 하계동 256-1	10,933.0	1989. 9. 26.	해제요청	-
27	-	강남구 수서동 737	12,102.7	1990. 2. 2.	해제요청	-
28	-	광진구 자양동 10-2, 10-33	1,313.1	2003. 1. 9.	해제요청	-
29	-	성북구 석관동 340-1, 409 일원	9,655.0	2005. 5. 12.	해제요청	-
30	-	동대문구 전농동 691-3	11,950.8	2006. 2. 16.	해제요청	-
31	-	은평구 진관동 246-5 일원	10,223.1	2006. 12. 28.	해제요청	-
32	-	서초구 방배동 974-3 일원	8,112.0	2010. 9. 2.	해제요청	-
33	-	은평구 갈현동 285-241 일원	7,752.0	2011. 9. 29.	해제요청	-
<b>합 계</b>			<b>370,612.3</b>	-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 시설 부분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24~2029)												실 시 기	비 고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 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24	'25	'26	'27	'28			'29년 이후		
총 계				278,683.8	2,371,802	2,371,802		1,085,778				1,286,024	222,730 (128,830)	628,651 (577,350)	322,917 (261,257)	314,550 (194,769)	93,577 (13,073)	789,377 (110,745)				
1	잠원동 71-10	2023~2025	11,608.0	108,900	108,900		78,900				30,000	87,900 (9,000)	21,000 (21,000)								고	
2	흑석동 60일대	2023~2025	14,047.0	104,000	104,000						104,000	89,600 (89,600)	14,400 (14,400)							2028	고	
3	장지동 17 일원	2023~2026	11,030.0	75,033	75,033		44,803				30,230	45,230 (30,230)	19,422	10,381						2030	초	
4	마천동 613	2025~2027	6,903.0	53,005	53,005		53,005						31,879	15,844	5,282					2025	초	
5	반포동 1300 일원	2025~2027	12,277.0	326,230	326,230						326,230		291,437 (291,437)	26,095 (26,095)	8,698 (8,698)					2037	초	
6	반포동 1305 일원	2025~2027	10,615.0	274,714	274,714						274,714		250,513 (250,513)	18,151 (18,151)	6,050 (6,050)					2037	중	
7	증산동 131-98	2026~2028	12,681.3	57,668	57,668		36,535				21,133			11,534 (4,227)	34,600 (12,679)	11,534 (4,227)				2028	중	
8	북가좌동 80-36 일원	2026~2028	7,438.0	48,895	48,895		48,895							9,779	29,337	9,779				2032	초	
9	강일동 산22-101	2026~2028	11,194.0	54,415	54,415		24,000				30,415			35,215 (30,415)	14,400	4,800				2032	초	
10	강일동 53-1	2026~2028	12,000.0	57,312	57,312		24,707				32,605			37,546 (32,605)	14,825	4,941				2032	초	
11	개포동 산156-2 일원	2026~2028	9,740.0	22,805	22,805		21,475				1,330			5,625 (1,330)	12,885	4,295				2036	초	
12	자곡동 102 일원	2026~2028	10,624.0	73,570	73,570		7,759				65,811			51,363 (51,363)	16,655 (14,448)	5,552				2038	중	
13	한남동 665-9 일원	2026~2029	10,763.0	127,147	127,147						127,147			2,949 (2,949)	105,875 (105,875)	8,846 (8,846)	9,477 (9,477)			2029	초	
14	둔촌동 180-1 일원	2026~2029	16,124.9	137,261	137,261		43,139				94,122			98,435 (94,122)	8,628	12,942	17,256			2026	중	
15	휘경동 118-1	2027~	10,000.0	65,889	65,889		26,409				39,480				5,282	15,845	44,762 (39,480)			2028	초	
16	북아현동 544 일원	2027~	9,070.1	72,090	72,090		25,071				47,019					52,033 (47,019)	15,043	5,014		2028	초	
17	압구정동 423, 424	2029~	14,999.8	273,156	273,156		273,156												273,156		초	
18	천왕동 14-137	2029~	12,293.0	61,084	61,084		61,084												61,084		고	
19	강일동 473-4 일원	2029~	11,000.0	51,742	51,742		20,447				31,295									51,742 (31,295)	2032	중
20	마천동 590(223)	2029~	23,678.0	68,190	68,190		68,190													68,190	2028	중
21	잠원동 61-6, 61-18	2029~	10,556.1	100,302	100,302		100,302													100,302		초
22	일원동 737	2029~	12,291.6	120,612	120,612		120,612													120,612		초
23	미아동 438 일원	2029~	17,750.0	37,782	37,782		7,289				30,493									37,782 (30,493)	2030	초

## 관련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